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6. 2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6. 6. 22
- 다. 상정일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수 철
- 나. 제안이유
 -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한 군세 감면 확대로 관련규정 개정
- 다. 주요내용
 - .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군세(재산세, 종토세)감면확대
 - └ 현행 :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 └ 개정 : 농가주택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 └ 현행 : 주택개량사업 계획 등에 의해 용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한자
 - └ 개정 : 주택개량사업 계획 등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되어 용자 및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휴)

-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의 이유 :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함

2.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제294조
전라남도 세정 13400 - 253 ('96. 3. 26) 호

3.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확대
 - . 현행 전용면적 $85m^2$ 이하를 $100m^2$ 이하로 개정하여 감면혜택을 확대
 - . 감면대상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
- 전용면적 $40m^2$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에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함
-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 신설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화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업으로 인하여" 를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을 포함한다) 로서" 로 하고 "85제곱미터" 를 "100제곱미터" 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1조 제 1항 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의" 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비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p> <p>의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p> <p>-----</p> <p>-----</p> <p>-----</p> <p>-----</p> <p>-----</p> <p>-----</p>
<p>1 ~ 3 (생 략)</p> <p>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신 설></p> <p>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2조 (시행규칙) -----</p> <p>-----</p>